

화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 11. 화순군수
- 나. 회부일자 : 2001. 11. 30
- 다. 상정일자 : 2001. 11. 30

2. 제안 설명요지

- 가. 제안설명 : 총무과장 임 양 환
- 나. 개정사유

- 6조2항에 의하면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중 특정인 비방 등 불건전한 내용을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삭제 하도록 되어 있으나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기질 경우 절차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현실성이 없으므로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이 삭제토록 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조례중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실과 명칭을 “기획예산실”에서 “총무과”로 기획예산실장“을 ”총무과장“으로 변경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의한 사이버 민원실 설치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준하여 설치토록 개정코자 함.

다. 주요내용

-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료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삭제 할 수 있다”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삭제 할 수 있다”를 삭제 (안 제6조 2항)
-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을 삭제한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관에 공개 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를 신설 (안 제6조 2항)
- 사이버 민원실 설치 근거법령을 사이버 민원실을 정의하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준한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개정 (안 제8조 1항)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정열)

-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바

- 정보통신의 업무가 기획예산실에서 총무과로 이관되므로 부서장의 명칭을 현실에 부합 되도록 개정하였는바 당연한 조치라 사료되며,
-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중 특정인 비방 등 불건전한 내용을 삭제시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처도록 되어 있으나 절차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부서장 (총무과장) 책임하에 삭제하되 그 이유를 해당게시관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에게 통지하도록 개정코자 하는바, 자칫 삭제명분을 과장 해석하여 군민의 알권리가 침해 된다거나 신속한 정보를 취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므로 운영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 제8조 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 조항의 근거 법령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⑤항 (별첨2)이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이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별첨1)를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으나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2 (별첨3)에서 사이버 민원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법과 시행령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조 제5항”을 “제38조의2”로 개정함이 합리 적일 것이라 사료됨.
- 다만, 내용상 상위관련 법규와의 상충여부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첨 부 : 화순군인테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기획예산실”을 “총무과”로 동조 제4항중 “기획예산실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4조중 “기획예산실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기획예산실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중 “기획예산실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기획예산실장”을 “총무과장”으로 하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를 삭제하고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제8조 제1항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5항에 의한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준한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16조 제3항중 “기획예산실”을 “총무과”로 한다.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중 “기획예산실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p> <p>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인터넷시스템 운영과 홈페이지 관리는 기획예산실에서, 홈페이지 분야별 운영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의한 분장사무를 주관하는 실과소 (이하 “업무부서”라 한다)에서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p> <p>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기획예산실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p>	<p>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총무과----- ----- -----</p> <p>④----- -----총무과장----- ----- -----</p>
<p>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기획예산실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총무과장----- ----- -----</p>
<p>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기획예산실장은 홈페이지에 게시판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p>	<p>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총무과장----- ----- -----</p>
<p>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기획예산실장은 홈페이지 게시 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p>	<p>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총무과장----- ----- -----</p>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②기획예산실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국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삭제할 수 있다.</p>	<p>②총무과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p>
<p>제8조(사이버 민원실 설치 운영)①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의한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p>	<p>제8조(사이버 민원실 설치 운영)①-----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준한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 하며 ----- -----</p>
<p>제16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 운영) ③군수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획예산실에서 업무를 관장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 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p>	<p>제16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 운영) ③----- -----총무과----- -----</p>
<p>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①기획예산실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기획예산실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 ① 총무과장 ----- ----- ②총무과장----- ----- ----- -----</p>